더불어 행복한, 더 좋은 정읍!
Happy Together, Better Jeongeup!

정향두리 향기공화국 정읍

생산등록번호	축산과-1389
등록일	2022. 01. 13.
결재일	2022. 01. 13.
공개구분	대국민 공개

주무관	축산악취저감팀장	축산과장	농업기술센터소장	부시장
				전결 2022. 1. 13.

2022년 ICT 연계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

정 읍 시
(축 산 과)

2022년 ICT 연계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

1 추진목적

□ 안개분무시설 지원을 통한 축산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악취저감

2 추진방향

□ 시설 운영 비용이 저렴하고 악취저감 효과가 우수한 시설 설치
□ 운영의 편리성과 시공회사의 사후관리가 가능한 시설 설치

3 사업개요

□ **사업기간** : 2022. 1 ~ 5월
□ **사 업 량** : 2개소
□ **사 업 비** : 80,000천원 (도비 16,550 시비 38,620 자담 24,830)
  ○ 재원비율 : 도비 21% 시비 48%, 자담 31%
□ **사업대상** : 축산업 허가를 받은 **돼지, 가금** 사육농가
□ **사업내용** : **ICT 악취측정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**
  ○ 안개분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(시설・장비) 일체(분사펌프, 콘트롤러, 자동수온조절기, 기계보호 케이스, 콤프레샤 등)
  ○ 축산 악취저감 목적으로 설치 운영이 가능한 장비

※ ICT 악취측정장비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

□ **지원단가** : 개소당 40백만원 **※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이며, 사업비 내 사업량 조정 가능**
□ **지원 우선순위**
  ○ 돼지 축종 우선 지원

구 분	우선선정 기준
선정 우선순위	○ (1순위) 깨끗한축산농장 지정 ○ (2순위) 환경친화축산농장, 광역악취개선 ○ (3순위) 동물복지인증 ○ (4순위) HACCP인증, 친환경축산인증

※ 동일 순위 중 최근 3년이내 축산환경개선 교육(농식품인력개발원, 축산환경관리원, 행정주관 등) 이수농가 우선 선정

4 세부 추진계획

□ 대상자 선정

○ 지원 우선순위 및 평가표에 의거 대상자 선정

- 동점자 발생 시 평가표 항목 1, 2, 3번 … 고득점자 우선

○ 대상자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 자에게 배정하여 사업추진

- 사업 포기자는 차후 2년간 지원 불가

□ 지원제한

○ **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·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·축산법 등** 법률 위반으로 **징역, 벌금, 과태료, 감사결과 처분, 시군의 행정조치**를 받은 축산농가,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

※ 개정 제재사항은 '20.1.1.이후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부터 적용, '19년까지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 선정시 후순위

- 징역(집행유예 포함), 벌금 : 3년
- 과태료(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), 과징금, 영업 정지(조업중지, 사용중지) : 2년
- 과태료(1회), 시정명령* 등 기타 행정처분 : 1년

* 단,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

-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: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

○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('20.3.25. 적용)·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(농경지 등 살포금지) 위반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

-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·군에 보급된 퇴비·액비 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함

□ 유의사항

○ 경쟁입찰 실시(수의계약 불가)

○ 전체 축사 시설을 포함한 안개분무시설 설치 원칙(사업비 초과는 자부담)

○ 노즐 막힘으로 인한 미사용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노즐의 5% 예비노즐 공급

○ 고압펌프 및 자동히터 등에 각각 누전차단기 설치

○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기간은 최소 2년 이상

□ 업체 선정기준

○ 직접 제조설차A/S를 할 수 있는 「산업집적법」에 의한 "공장등록을 필" 한 업체
(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급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도내 공장등록업체 우선 선정)

○ 스마트팜 확산사업 참여기업(농림축산식품부)등록업체 우선 선정

○ 관련 특허 보유 업체 우선 선정

□ 시설 세부세항 (동급이상)

가. 분사펌프

① 부식으로 인한 노즐 막힘방지를 위해 유체 접촉부위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 제작

② 분사펌프는 삼상 100bar 이상 고압펌프 사용

③ 사용을 정지한 후 재사용 시 펌프 내의 불순물 배수시설 설치

④ 환경개선제(탈취제 등)는 자동희석(정량공급)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할 것

나. 컨트롤 및 케이스

① 컨트롤은 축사 내부의 분사조절를 자동으로 가능하도록 갖춰야 하며, 외부기기(핸드폰, PC등)으로 제어가 가능할 것 * **단, 인터넷망이 구축된 농장에 한함**

② 제품의 동파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케이스 갖춰야 함

③ 기계실 내부에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(자동히터장치 등) 설치

다. 고압분무 노즐

① 노즐은 분무압력 100bar를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

② 노즐의 본체재질은 스테인리스 316L로 제작
(돼지 · 닭 0.2mm이하 * 단 외부는 축사환경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)

라. 배관

① 유체 접촉부위 및 축사 내부 설치배관은 스테인리스 316L로 제작 외부는 200bar를 견딜 수 있는 고압호스로 설치

② 노즐막힘 방지를 위해 유체를 여과하는 여과장치(미세필터 등)를 5개 이상 설치

③ 동파방지 및 배관 오염차단을 위해 배관내 잔수배출 시설 설치(콤프레셔)

마. 콤프레셔

① 배관에 유체를 충분히 배수시킬 수 있는 콤프레셔를 설치

② 삼상 3HP 150L 이상

5 추진절차

□ 사업신청

○ 신청기간 : 2022. 1. 17. ~ 1. 27.

○ 제출서류 : 신청서, 신청내역(엑셀), 평가표(증빙서류 포함)

- 읍면동사무소에 제출(사업장 주소지 기준)

○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신청서와 평가표를 작성 및 검토 후 시 제출

□ 사업계획 검토 및 대상자 선정

○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후 지원 우선순위 및 평가표에 의거 대상자 선정

○ 지방세 체납 등 지원 제외 요건 검토

○ 지방보조금 심의회 의결 후 확정 통보

□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

○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
○ 청렴이행서약서

○ 보조사업자 관리카드

○ 자부담 확보 통장(보조금 전용통장)사본, 견적서

□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

○ 읍면동 :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 시행 안내

○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 시 승인 후 사업추진

○ 사업 대상자 변경 시 사전 시·도 승인 후 사업추진

□ 보조금 집행

○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선 집행을 통한 사업 완료 준수

○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 (제품공급, 또는 설치현장 사진 등)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등을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

※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,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

□ **사후관리**

○ 시설 장비 A/S 기간 경과 후 고장 발생 시에는 시공회사와 협의하여 정상운영

○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정지시 및 자금 회수조치

○ 사업완료 이후에는 기계장비 운용실태 점검 실시

※ 기타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에 의함

6 추진계획

□ 사업신청서 접수 ····· 2022. 1. 17. ~ 1. 27.

□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(대상자 선정) ····· 2022. 2월중

□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····· 2022. 2월중

□ 사업시행 ····· 2022. 2월 ~ 5월

□ 보조금 지급 및 정산 ····· 사업완료 즉시